

## 「송전기능인력 관리 절차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b>23. 교육시설</b></p> <p>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알맞은 강의실, 실습실 및 기타 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lt;표3&gt;의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3&gt; 교육시설 확보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면 적</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 의 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시정각교육시설 포함</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 습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 이상</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td> </tr> </tbody> </table> <p><b>24. 실습용 기자재</b></p> <p>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필요한 설비, 장비 및 공구를 갖추어야 하며 &lt;표4&gt;의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구 분	면 적	비 고	강 의 실	200㎡ 이상	<u>시정각교육시설 포함</u>	실 습 장	3,000㎡ 이상		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150㎡ 이상	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	<p><b>23. 교육시설</b></p> <p>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알맞은 강의실, 실습실 및 기타 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lt;표3&gt;의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표3&gt; 교육시설 확보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면 적</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 의 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범프젝트, 컴퓨터 등 시정각 교육 시설 구축</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 습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표4의 실습용기자재 중 실습설비 구축</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td> </tr> </tbody> </table> <p><b>24. 실습용 기자재</b></p> <p>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필요한 설비, 장비 및 공구를 하여 갖추어야 하며 &lt;표4&gt;의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구 분	면 적	비 고	강 의 실	200㎡ 이상	<u>범프젝트, 컴퓨터 등 시정각 교육 시설 구축</u>	실 습 장	3,000㎡ 이상	<u>표4의 실습용기자재 중 실습설비 구축</u>	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150㎡ 이상	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	<p>강의실내 구비해야 하는 교육장비 구체화</p>
구 분	면 적	비 고																								
강 의 실	200㎡ 이상	<u>시정각교육시설 포함</u>																								
실 습 장	3,000㎡ 이상																									
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150㎡ 이상	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																								
구 분	면 적	비 고																								
강 의 실	200㎡ 이상	<u>범프젝트, 컴퓨터 등 시정각 교육 시설 구축</u>																								
실 습 장	3,000㎡ 이상	<u>표4의 실습용기자재 중 실습설비 구축</u>																								
기타 후생시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150㎡ 이상	필요시 기숙사 별도운영																								

### 현행

<표4> 실습용 기자재 확보기준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실습설비	철탑	현수, 내장	각 1기 이상
	조립용	1기 이상	송전전기원 과정에 한함
애자장치 급구류	345kV현수(1, 2련), 내장(2련)	각 1set 이상	
	154kV현수(1, 2련), 내장(1, 2련)	각 1set 이상	
훈련장비	측량장비	4 set 이상	송전전기원 과정에 한함
	TENSIONER	2대 이상	
	PULLER	7 ton	
	드럼스텐드	2조 이상	
	스페이서카	2B 또는 4B	
	전선압축기	100 ton	
	BV 원치	2대 이상	
	가선블럭	10대 이상	

### 개정(안)

<표4> 실습용 기자재 확보기준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실습설비	철탑	현수애자장치형, 탑정 20m이상	1기이상
		내장애자장치형, 탑정 20m이상	1기이상
		조립용	1기이상
전선	ACSR 410mm <sup>2</sup> × 2B	1경간, 1회선 이상	송전전기원 과정에 한함
	ACSR 480mm <sup>2</sup> × 4B	1경간, 1회선 이상	
애자, 애자장치급 구류	25,000LBS	10개이상, 1련	154kV 현수
	36,000LBS	20개이상, 2련	154kV 내장
	210kN	34개이상, 2련	345kV 현수
	300kN	32개이상, 2련	345kV 내장
훈련장비 (임대가능)	측량장비	광과 또는 GPS	1set이상
	TENSIONER		2대 이상
	PULLER	7 ton	1대 이상
	드럼스텐드		2조 이상
	스페이서카	2B 또는 4B	1대 이상
	전선압축기	100 ton	1대 이상
	BV 원치		2대 이상
	가선블럭		10대 이상

### 개정사유

실습장비 기자재 규격 명확화 및 현장여건 변화에 필요한 실습설비 구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훈련장비 구비 요건 완화(구입 또는 임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훈련장비	활선애자 청소기	345kV용 노즐직경 2.0mm(노즐압력 35kg/cm <sup>2</sup> 이상)	1대 이상	송전활선원 과정에 한함	활선애자 청소기	345kV용 노즐직경 2.0mm(노즐압력 35kg/cm <sup>2</sup> 이상)	1대 이상	송전활선원 과정에 한함	Megger	1000V, 500V	각 1대 이상	불량애자 검출기	전계식, 음향식 및 램프식검출기	각 1조 이상	불량애자 검출기 동작시험기	0 ~ 30kV	1대 이상	개인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허리띠 등	40 set 이상	개인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허리띠 등	40 set 이상	공구 및 기타	가선, 조립용 공구	각 2조 이상	공구 및 기타	가선, 조립용 공구	각 2조 이상	음향식, 램프식 검출기 : 154kV급에 미사용 불량애자검출기 동작시험기 : 불필요  문구 명확화	
		154kV용 노즐직경 1.2mm(노즐압력 25kg/cm <sup>2</sup> 이상)	1대 이상			154kV용 노즐직경 1.2mm(노즐압력 25kg/cm <sup>2</sup> 이상)	1대 이상			1000V, 500V	각 1대 이상		전계식 검출기	1조 이상		삭제	도전복 (도전화, 도전양말 포함)		5set 이상	도전복 (도전화, 도전양말 포함)		5set 이상	가선, 조립용 공구		각 2조 이상	가선, 조립용 공구		각 2조 이상			
<b>25. 강사진 구성</b>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필요한 강사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5>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b>25. 강사진 구성·운영</b>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필요한 강사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5>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나. 이론강사 및 실습교사는 상호 겸직이 불가능하다.</p> <p>다. 필요시 외부강사 위촉은 가능하나 실습교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상시 고용형태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p> <p>라. 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는 위촉강사(또는 교사)는 교육기관과 강의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협약서 및 강사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b>30. 협약의 취소</b></p> <p>가. 생략</p> <p>나. 생략</p> <p>1) ~4) 생략</p> <p>5) 제29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p> <p>6) 생략</p>	<p>나. 이론강사 및 실습교사는 상호 겸직이 불가능하다.</p> <p>다. 필요시 외부강사 위촉은 가능하나 실습교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상시 고용형태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p> <p>라. 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는 위촉강사(또는 교사)는 교육기관과 강의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협약서 및 강사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b>30. 협약의 취소</b></p> <p>가. 생략</p> <p>나. 생략</p> <p>1) ~4) 생략</p> <p>5) <u>제28항</u>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p> <p>6) 생략</p>	<p>오타수정</p>